case
4

스테인리스 강판

요약

사례명	**스테인리스 강판**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
사례번호	NY N333889 (2023.07.20.)
사실관계	인도네시아에서 용해·열간압연·냉간압연하여 코일 형태로 제조한 스테인리스강을 중국으로 수출하여 표면 연마, 절단, 코팅 등의 공정을 수행한 후 미국으로 수출
쟁점 및 판정	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중국에서 수행된 후공정(연마, 절단, 코팅 등)은 해당 강판의 명칭, 성질 또는 용도를 변화시키지 않으므로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으며, 본질적 제조는 인도네시아에서 수행되었으므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는 인도네시아임
근거법령	-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(19 U.S.C. § 1304) -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(19 C.F.R. § 134) -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(19. U.S.C. § 1862)

Ⅰ 품목개요

품목정보

HS Code	제7219.90호	
세율	한국 기본세율	8%
	미국 기본세율	0%
	한-미 FTA 협정세율	0%
한-미 FTA 원산지결정기준	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	

제7219.90호 시장 정보

대미 수출액 (단위: 천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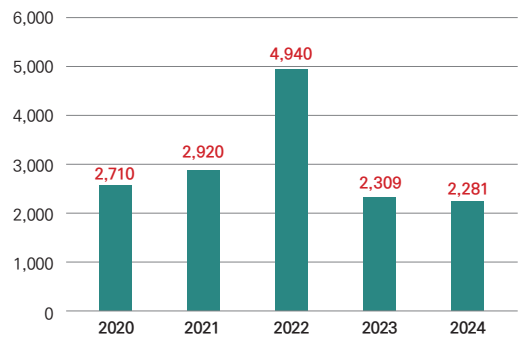

미국 수입 시장 점유율 변화 (단위: %, 한국 수입액 / 미국 총 수입액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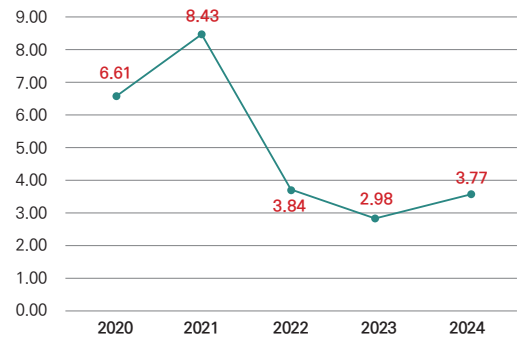

2024년 우리나라 주요 수출 국가 (단위: 천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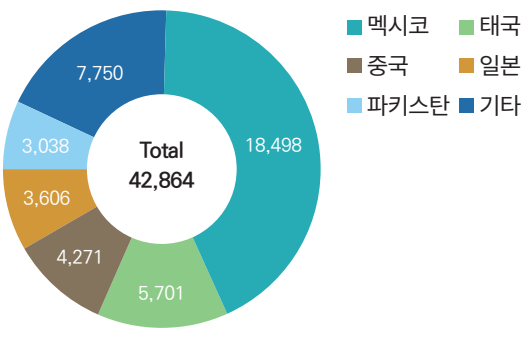

2024년 미국 주요 수입 국가 (단위: 천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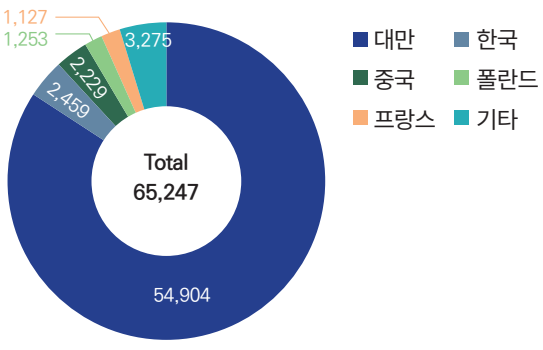

❖ 자료: K-stat

Ⅰ 판정사례

사 례 명 [스테인리스 강판]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

사례번호 NY N333889 (2023.07.20.)

사실관계

요청자	Millennia Stainless Inc.	
제품	제품명	• 연마 및 코팅 처리된 스테인리스 강판(Polished and Coated Stainless Steel Sheet)
	구성	• Grade 304 또는 430 스테인리스강 - 두께: 0.45mm ~ 3.42mm - 폭: 최대 1,524 mm - 니켈 함량: 0.75% ~ 10.5% - 기준 규격: ASTM A240/A240M
	용도	• 가전제품, 실외용 그릴 등 최종 제품 생산용
	완제품 HS Code	• 7219.90.0025

제조공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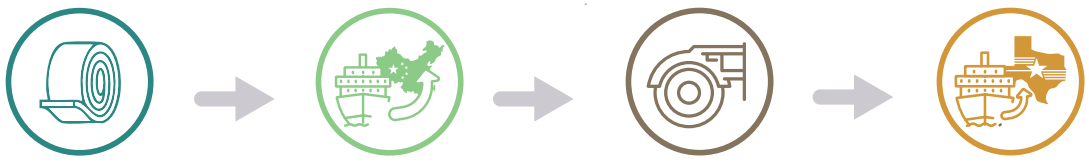

01 인도네시아 — 스테인리스강을 코일 형태로 제조

02 인도네시아 — 중국 수출

03 중국 — 연마, 절단, 코팅

04 중국 — 포장 후 미국 수출

상세공정

인도네시아

- 스테인리스강 용해 및 주조를 통해 슬래브 제조
- 열간압연(hot-rolling)
- 피클링(pickling) 및 어닐링(annealing)
- 냉간압연(cold-rolling)
- 코일 형태로 중국으로 수출

중국

- 연마(polishing)
- 시트 형태로 절단(slitting)
- 한쪽 면 PVC 코팅 및 반대쪽 면 지문 방지(anti-fingerprint) 코팅
- 길이 절단(cut-to-length)
- 포장 후 미국으로 수출

쟁점사항

✔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

관련 법령 및 분석

1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

관련 법령 검토

☑ 『19 C.F.R. § 134.1(b)』에 따르면, "원산지"란 해당 물품이 제조,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, 다른 국가에서 추가된 공정이나 재료는 해당 물품에 대해 '실질적인 변형(substantial transformation)'을 발생시켜야만 새로운 원산지가 될 수 있음

- 원산지는 해당 물품이 마지막으로 '실질적인 변형'을 거친 국가이며, 이는 물품의 명칭, 성질 또는 용도에 변화를 초래하는 가공을 의미

❖ 참고 판정: *CBP Ruling HQ 735009*

판정 결과

☑ 중국에서 수행된 후공정(연마, 절단, 코팅 등)은 해당 강판의 명칭, 성질 또는 용도를 변화시키지 않으므로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으며, 본질적 제조는 인도네시아에서 수행되었으므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는 인도네시아임

기타 의견

☑ 해당 제품(HTSUS 7219.90.0025)은 『대통령 포고령(Presidential proclamations 9704 및 9705)』에 따라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무역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며, 수입 시 Chapter 72, 73 또는 76에 따른 기본 분류에 더해 Chapter 99(추가 관세 분류)도 함께 신고해야 함

결 론

✔ 연마, 코팅, 절단 등의 중국 내 후가공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음

✔ 최종 스테인리스 강판의 원산지는 인도네시아로 판정됨

✔ 해당 제품(HTSUS 7219.90.0025)은 제232조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 대상일 수 있음

Ⅱ 시사점

• CBP는 표면 처리·절단 등 원자재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마감 공정에 대해 일반적으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함

Ⅲ 참고자료

- CBP Ruling NY N333889 (2023.07.20.), https://rulings.cbp.gov/ruling/N333889
- CBP Ruling HQ 735009 (1993.07.30.), https://rulings.cbp.gov/ruling/735009
- CBP 19 C.F.R. § 134, https://www.ecfr.gov/current/title-19/chapter-I/part-134
-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(19 U.S.C. § 1304), https://uscode.house.gov/view.xhtml?req=granuleid:USC-prelim-title19-section1304&num=0&edition=prelim
-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(19. U.S.C. § 1862), https://uscode.house.gov/view.xhtml?req=granuleid:USC-prelim-title19-section1862&num=0&edition=prelim